

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6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원과 병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(2018. 3. 1. 개원 예정)하고, 단설유치원인 서울세명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서울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18년 3월 1일로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치원 폐지(별표7)

- 강남서초교육지원청 : 서울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[강남구 자곡로 55(세곡동)]

나. 유치원 신설(별표7)

- 강서양천교육지원청 : 서울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[강서구 양천로 11(방화동)]
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[강서구 등촌로 39길 71(등촌동)]
- 강남서초교육지원청 : 서울세명유치원 [강남구 자곡로 55(세곡동)]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[별첨 3]

- 1)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
- 2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관장사무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별첨 2)

다. 관련부서 협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[별첨 1]
- 2) 입법예고(2017. 9. 7. ~ 9. 27.) 결과 : 의견 없음
- 3) 교육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 구분란 중 “강서양천교육지원청(24교)” 을 “강서양천교육지원청(26교)” 으로 하고, 자치구명란 중 “강서구(12교)” 를 “강서구(14교)” 로 하며,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“서울등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 다음에 “서울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 과 “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

구 분	자치구명	명 칭	위 치
강서양천 교육지원청	강서구	서울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	강서구 양천로 11(방화동)
		서울등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	강서구 등촌로39길 71(등촌동)

별표 7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“서울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 을 폐지하고, “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 란 다음에 “서울세명유치원”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자치구명	명 칭	위 치
강남서초 교육지원청	강남구	서울세명유치원	강남구 자곡로 55(세곡동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서울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폐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2】

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, 건축비 및 리모델링 소요비용

<교육기본법>

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.

<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>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o 교실전환과 학급증가에 따른 유치원별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금액

3. 비용추계의 결과 (투자예산 현황 자료 대체)

(단위 : 천원)

연번	학교 급	학교명	토지매입비	시설비	합계	비고
1	유	서울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		653,900	653,900	
2	유	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		948,800	948,800	
3	유	서울세명유치원		24,800	24,800	

- ※ 학교신설은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절차 전 공유재산심의, 예산심의 등을 완료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비용 없음 (투자예산 현황자료로 대체)

4. 재원조달 방안

- 토지매입비 : 일반회계(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) 및 교육비특별회계(교육부 교부금) 각 50%
- 시설비 : 교육비특별회계(교육부 교부금) 100%

5. 덧붙이는 의견

- 별도 의견 없음

6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이경호 (399-9610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(예산현황 자료 대체)

【별첨 3】

관 계 법 규

■ 교육기본법

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.

② (생 략)

[전문개정 2007.12.21.]

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1. ~ 4. (생 략)
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6. ~ 17. (생 략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학교지원과	
연 락 처	02-399-9610